

韓國特許制度和 勅令196號

李 承 初
〈辨理士〉

“韓國特許制度의 嚆矢는 1908年 8月 12日에 公布된 勅令 第196號인 韓國特許令이다”라고 韓國特許의 沿革으로 쓰여 왔습니다. 나도 1970年에 特許局 管理課 事務官으로 勤務하면서 그렇게 쓰았습니다. 每年 열리는 定期國會에 提出하는 業務報告書나 때때로 現況報告等에는 의례히 맨 앞에 沿革에서 그렇게 쓰았으며 자랑스럽게 力說하기도 했습니다. 그 理由는 舊韓末 우리政府가 特許制度를 導入하여 皇帝의 勅令으로 韓國特許令이라는 이름으로 公布했으니 얼마나 多幸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年代로 보아 1908年은 統監正治가 實施됐다고는 하더라도 所謂 말하는 韓日合併은 되지 않은때였으니 當然히 그러하리라는 생각에서 추호의 의심이나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特許行政을 遂行하는 저 自身뿐 아니라 産業財産權法이나 制度를 研究하던 많은 분들도 例外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지은 産業財産權法 책에 보면 特許制度의 舊韓末 시대를 이렇게 表現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産業財産權制度가 처음

소개되었으니 우리의 制度로서 定着 發展하지 못한 때이다.

우리나라에서 特許法을 처음으로 制定한 것은 舊韓末 即 1908年 8月 12日 勅令 第196號로 公布된 「韓國特許令」인데, 이 韓國特許令은 同年 8月 16日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約2年間 特許行政이 實施되었는데 特許第1號로 發明特許를 許與한 것이 鄭寅琥 씨의 「말총모자」이다. 그러나 곧 日帝의 침략이 있어서 1910年 8月 29日 이른바 韓日合併이 되자 即日로 韓國特許令은 폐지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대신 日本의 特許法 意匠法 商標法 實用新案法이 韓國에도 施行되게 되었으며, 特許行政도 日本의 中央機關에서 흡수하여 一括取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인한 韓國人의 發明意慾이 크게 저해된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固有의 産業財産權法의 發展은 기대할 수 없게 된것이다.”

이 글로 보아도 勅令196號인 韓國特許令이 韓國特許制度의 嚆矢임이 分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全然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特許行政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特許歷史에 관한 資料

를 接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日本에서 는 日本特許50年史, 70年史, 100年史가 發刊돼 있었던 것입니다. 內容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公職에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1908年 8月 12日에 韓國特許令이 公布되었으니 1988年 8月 12日이 80年에 해당되는 해인데... 그렇다면 韓國特許制度 80年史라는 記錄이 나올법한 안이 아닌가 하는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7年에 編纂에 着手하게 되면서 나는 失望과 挫折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韓國特許制度의 嚆矢라는 勅令196號는 純宗皇帝의 勅令이 아니라 侵略者인 日本 明治王의 勅令이었다는 事實을 資料調査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瞬間의 心情! 떠오른 것이 김삿갓이었습니다. 安東金씨 후예로 자랑스럽게 詩會에 나가 宣川府使金益淳의 비김함을 痛烈히 비난하여 壯元을 하였는데 그 人物이 바로 자기의 祖父였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머리에 삿갓을 쓰고 平生을 放浪生活로 마친 김삿

갓의 마음이 어떠했으랴? 하는 생각을 한것입니다. 特許廳에서 20년간가이 勤務하면서 無責任하게 유령같은 勅令196號를 韓國政府의 것으로 떠받들고 자랑스럽게 韓國特許의 嚆矢라고 떠벌렸음이 너무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의 반사작용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으며 여기서 勅令196號의 實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관한 記錄은 統監府公報에 掲載돼 있었고 그 公報는 서울大 中央圖書館에 所藏돼 있었으며 그 影印本이 市中에 出版된 것을 알게된 것도 그 뒤였습니다. 記錄에 보면 勅令第196號는 韓國特許令이었으며 197號는 韓國意匠令 198號는 韓國商標令 등으로 이어졌으며, 勅令196號는 全文 5個條로 意匠令은 67個條로 商標令은 7個條로 商號令과 著作權令이 4個條로 돼있었습니다. 그 內容은 日本政府가 韓國에서 日本의 産業財産權制度를 施行함에 있어서 當時 日本의 特許法, 意匠法, 商標法 등 産業財産權에 關한 諸法令은 그 대로 韓國에서 適用實施하는데 따른 名稱이나 節次 등을 修正하여 施行한다는 것을 明文化해 놓은 것입니다. 例를 들면 日本國의 各法令에 “帝國”이라고 한 것은 “韓國”으로 “特許局”이라 한 것은 “統監府特許局”으로 “區裁判所”라 한것은 “統監府所屬理事廳”으로 大審院이라한것은 “理事

廳” 및 “統監府法務院”으로 하는 등 法文上의 해석일뿐 그 外는 日本것 그대로를 韓日兩國民은 同一資格으로 保護를 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은 4日후인 8月 16日부터 施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事案을 보면서 日本의 70年史나 100年史의 特許歷史가 부러워서 80年에 該當되는 1988年에 韓國特許制度 80年史로 編纂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虛脫과 自愧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歷史的인 記錄을 아무런 의심이나 관심조차 두지않은채 이름이 韓國特許令이라는 名稱만 믿고 우리나라의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나를 짓눌러왔습니다. 부수적으로 알게된것도 있는데 舊韓國政府의 官報에 보니 純宗皇帝의 勅令은 100號로 끝이 나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統監府公報에 실린 勅令이 이어지면서 特許令이 196號였으니 얼마나 많은 制度들이 日本 明治王의 勅令으로 公布됐다고 하는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1976年 開港이 되면서 日本은 政治植民前에 經濟的植民策에 注力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例로 日本人 居留民이 開港當時엔 不過 54名이던 것이 1908年에는 126,000餘名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904年 日本이 露日戰爭에서 勝利한 餘勢와 10年前

인 1894年의 淸日戰爭에서의 勝利를 亞細亞侵略의 기세를 올릴때라는 듯이 1905年 統監政治의 근거인 이른바 乙巳條約을 맺고서 그들은 더욱 強해졌던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統監政治를 자행하면서 外交權을 박탈하는 등 國際條約이나 法理等을 無視한채 마음대로 專行했으니 그때의 內閣에는 李完用을 中心으로 朴齊純 高永喜 宋秉峻 趙重應 등의 反民族的 親日者들이 伊藤博文과 어울려 每事를 그들의 要求대로 閣議에서 通過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韓國特許令도 當時의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은 그 名義로 閣令으로 公布한 것입니다. 여기서 日本이 公布한 勅令196號의 韓國特許令의 原形과 韓國政府의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이 告示와를 比較하면서 完全히 主客이 전도됐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朕이 韓國特許令을 裁可하여 茲에 이를 公布한다.

御命 御璽

明治四十一年 八月 十二

日

內閣總理大臣 候爵 桂 太郎

外務大臣 子爵 寺內 正毅

勅令 第196號

韓國特許令

第一條 韓國에 있어서 特許에 關하여는...

이를 韓國政府에서는 다음

(10p에서 계속)